

##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8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0. 2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# 1. 개정이유

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확대 및 인용법인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시설(안 제4조제2호)

-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 시설 확대
- 「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 삭제에 따른 조문 정비

나. 재정적 지원(안 제5조제2항)

-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 지원 대상 확대

##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붙임

#### 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

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해당 없음(가족복지과-34154호, 2025. 8.19.)

라. 입법예고: 2025. 8. 11. ~ 9. 1.(21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###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)”을 “(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시설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”을 “자동심장충격기”로 한다.

제4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설치의무대상시설  
이외의 다중이용시설

제4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4조제1호”를 “제4조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노력하여야”를 “노력해야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조치하여야”를 “조치해야”로 한다.

제9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)  <u>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</u>  <u>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</u>  <u>같다.</u>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설치 권장 시설</u></p> <p>가. <u>다중이 이용하는 「공중</u>  <u>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3조</u>  <u>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</u>  <u>시설</u></p> <p>나. 「<u>공중위생관리법</u>」 제2조  <u>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</u>  <u>시설의 연면적이 1천제곱</u>  <u>미터 이상인 시설</u></p> <p>다. 「<u>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</u>  <u>흥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1  <u>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</u></p> <p>라. <u>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</u>  <u>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</u>  <u>이용시설</u></p>	<p>제4조(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 <u>대상시설) 자동심장충격기 --</u>  <u>-----</u>  <u>---</u>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응급의료에 관한 법률</u>」 제  <u>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설치</u>  <u>의무대상시설 이외의 다중이</u>  <u>용시설</u>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재정적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5조(재정적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제4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설치 및 권장)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<u>노력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설치 및 권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노력해야</u>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장비관리)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,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<u>조치하여야</u> 한다.</p>	<p>제7조(장비관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조치해야</u> -----.</p>

## 근거법규

### □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응급의료의 제공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,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·운영,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,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# 2. 미첨부 사유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에 의거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함

### 3. 작성자

- 소 속: 건강관리과
- 직 급: 지방의료기술주사
- 성 명: 서동주
- 연락처: (052)290-4332